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당(지구당) 설치근거 마련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27호)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43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5호)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0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8
2. 지구당 제도	9
3. 개정안의 검토	13
(1) 지역당 도입여부	13
(2) 세부사항 검토	15

I. 제안경위

1. 김영배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윤상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3. 남인순의원안

가. 발 의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4. 장경태의원안

가.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영배의원안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윤상현의원안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 2 신설).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남인순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라.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장경태의원안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구 분	김영배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장경태의원안
구성 (제3조)	현행(중앙당&시도당) + 지역당			
지역당 발기인 (제6조)	2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법정 지역당수 (제17조)	없음	30개 이상 (5개 이상 시도에 분산)	없음	
지역당 법정당원수 (제18조)	없음	100명 이상		없음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	1명 이내	2명 초과 금지		
당원협의회 설치단위 (제37조)	읍·면·동별	지역당 미설치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 (명칭은 사무소)	읍·면·동별	

2. 지구당 제도

(1) 연혁¹⁾

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월 31일 최초로 제정된 「정당법」에 의하여 만들어짐. 당시 「정당법」이 존재했던 국가는 독일과 아르헨티나뿐이었으므로, 독일을 주요한 비교 사례로 삼아 정당법이 제정되었음.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던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당시 지구당 제도는 여러모로 제3공화국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음.²⁾

제정 당시 「정당법」 규정은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3분의 1 이상, 약 44개의 지구당을 가져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제정 「정당법」 제25조), 각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므로(제정 「정당법」 제27조) 최소 2,2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했음. 강력한 집권여당이거나 기득권에 기반을 둔 유력 야당이 아니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결국, 지구당 제도는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 정당의

1) 이하의 내용은 주로 아래 논문 참고

조한상,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2018)

2) 조한상,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2018) p.82.,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5.

난립을 막기 위해서, 즉 신진 정치세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음.

(2) 지구당 폐지의 배경³⁾

40여 년간 운영되어온 지구당이 폐지되게 된 배경은 조직으로서 지구당이 중앙의 정치와 유권자를 연계하는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주로 정치인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수단, 특히 선거동원의 기제로 이용되었기 때문임.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음. 지구당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고문, 사무국장, 부장, 동책, 통책, 반책까지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었음.

지구당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와 상근직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지역주민 경조사비, 행사비, 당원 및 조직관리비 등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였음.⁴⁾

지구당 운영비를 조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에게 있었고, 국가의 지원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지구당위원장은 지

3) 이하의 내용은 주로 아래 논문 참고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4)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수도권외의 경우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 지방의 경우에도 월 3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었음.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6.

구당운영비 마련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취약해졌고, 지구당 운영경비의 조달을 지구당위원장에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음.

특히, 선거철에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지구당으로 공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음. 대선이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이 적발되었고, 그때마다 지구당 조직은 정치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으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음.⁵⁾

이에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⁶⁾을 통해 지구당 조직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당시 개정의 핵심내용은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임. 이에 따라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지구당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바뀌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담당하던 역할, 즉 정당의 창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당원명부의 관리, 정당의 해산 등과 관련된 역할을 시·도당이 맡게 되었음.

그 밖에 개정 「정당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당의 경량화”임. 과거 중앙당의 경우 유급사무원을 15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 「정당법」은 유급사무원을 100인 이내로 두도록 줄였는데

5) 세계일보(2024.6.2.), “차떼기 악몽 vs 원외도 숨 좀 쉬자, 지구당 논쟁”
SBS(2024.5.30.), “지구당 부활? 돈 먹는 하마 우려...정개특위 만들자”
이데일리(2015.6.4.), “돈 먹는 하마, 지구당 제도 부활하나”

6) 2004년 4월에 실시될 제17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원내정당들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정치개혁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앞다투어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에 지구당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임.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9

이는 정당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 구·시·군의 당 연락소 유급사무직원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2004년 「정당법」 개정내용 비교 》

구 분	기존의 정당법 (2002.3.7. 개정)	2004년 개정 정당법 (2004.3.12. 개정)
정당의 구성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으로 구성한다
입당·탈당	제20조·제23조 지구당 에 제출	제23조·제25조 시·도당 에 제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의2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에는 150인 이내, 당지부에는 5인 이내, 지구당 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30조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에는 100인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 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 자료: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80 내용 일부 수정

3. 개정안의 검토

(1) 지역당 도입 여부

지구당 폐지(2004년)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지구당(지역당) 부활의 적실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지구당 폐지를 통해 얻으려 했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개선하여 정당정치의 비용절감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 관련된 분석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경비는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⁷⁾

그러나, 정당경비와는 달리 선거비용과 조직 활동비 명목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⁸⁾ 중앙당 중심의 고비용 정치는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⁹⁾도 제기되고 있고, 정당의 비용이 감소한 것은 지구당 폐지와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¹⁰⁾도 제기되는 등 지구당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함.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 문제가 되었던 지구당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¹¹⁾이

7) 조한상,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2018) p.88.

8) 지효우·전성욱, “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 및 발전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2016)

9) 지효우·전성욱, “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 및 발전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2016)

10) 하네스 B.모슬러,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인간사랑(2013)

11) 이정진,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0) p.376.

있는가 하면, 하루빨리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 정당정치와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¹²⁾도 있음.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간 정치활동의 형평성과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당 설치로 인한 사당화 가능성 및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당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제기된 바 있음.

《제21대국회 지역당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구 분	논의사항
도입 찬성	- 원내외 당협위원장 사이의 정치활동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당원협의회는 현행법상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으나, 많은 지역에서 편법으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 3당 원외 당협위원장은 지역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 입장문 제출 (당원 수가 늘어난 만큼 당원의 지역활동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고, 과거 문제가 되었던 회계 투명성 등은 현재 개선되어 지역당 부활 필요) - 지방자치시대·분권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위해 지역당 필요 * 지역당 부재로 인해 당원 관리가 중앙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예속된 측면 -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고비용 정당구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는 개선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의식 또한 성숙해진 상황 *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등 선거환경과 풍토가 변화하여 과거 문제되었던 금권선거나 과도한 선거비용소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도입 반대	- 지역당 설치시 정치인 개인의 자금력이나 중앙당의 자금지원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정치가 개인 또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 존재 -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 존재 -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당이 그의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하여는 의문 존재 * 현행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대안 제시

※ 자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제1차(2022.11.24.) 회의록 내용 요약

12) 이정희,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원원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2015)

따라서, 지역당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 지역당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세부사항 검토

① 현행 시·도당의 존치 여부(안 제3조)

현행법은 정당의 구성요소로 중앙당(수도 소재)과 시·도당(특별시·광역시·도 소재)만을 규정¹³⁾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을 존치하면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을 추가하고 있음.¹⁴⁾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정당의 구성요소로 중앙당(수도 소재)과 지구당(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만 규정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였음.¹⁵⁾

13)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4) 법정조직 외에 임의기구로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법 제37조제3항)는 현행과 개정안 모두 허용하나, 설치단위는 후술하는 내용과 같이 개정안별로 상이함.(검토보고 p.21)

15)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구당 폐지 전
구성 (제3조)	중앙당 + 시·도당	중앙당 + 시·도당 + 지역당	중앙당 + 지구당
	(임의기구로 당원협의회)		(임의기구로 당지부, 당연락소)

광역단위의 정치·행정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 법정기구로서 현행 시·도당을 존치할 필요가 있겠으나, 지역당을 부활하면서 정당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현행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지난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경향에 따른 광역단위 정치·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시·도당을 법정 조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제400회 정치개혁특별소위 제1차(2022.11.24.) 회의록》

○김영배 위원 시·도당을 임의화했을 경우에 지금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시·도당은 법정 기구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현재 우리 선거제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갈수록 광역 단위별 소위 행정 수요나 정책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지방화 시대, 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나 부울경이나 기타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이나 아니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위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 중앙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향후 국가 전략상으로도 시·도당이 정치 주체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될 단위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적 정치·행정 수요가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록 p.7)

○**심상정 위원** 지구당 폐지하면서 시·도당이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지금 지역당을 부활하면 임의 조직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광역 차원의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역 시·도지사도 다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책 단위로서 명확하게 정치 영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존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 p.11)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의견¹⁶⁾을 제안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당(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정당의 층위가(현행 중앙당-시도당 2단계에서 중앙당-시도당-지역당 3단계로) 늘어날수록 정당등록의 요건이 엄격해지므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결국, 현행 시·도당의 존치 여부는 광역단위의 정치·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현행 법정기구를 존치할 필요성과 정당설립의 자유와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0016, 2016.8.25.제안),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② 창당 시 발기인(안 제6조) 및 법정지역당수(안 제18조) 등

현행법은 정당의 창당활동을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하도록 하면서,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당의 구성 요소로 지역당을 추가하면서 창당 시 발기인을 적게는 20명 이상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정당 창당시 지구당의 경우 10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하였음.¹⁸⁾

구 분	김영배·남인순· 장경태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지구당 폐지 전
지역당 발기인 (제6조)	20명 이상	30명 이상	10인 이상

창당 시 발기인의 요건을 높일수록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¹⁹⁾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 발기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법정시·도당수로 5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의 법

17) 「정당법」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18) 「정당법」 제5조(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원수를 1천인 이상으로 규정²⁰⁾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법정 지역당수와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정안도 있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도 존재함.

참고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법정지구당수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²¹⁾의 10분의 1이상을 규정하고 있었고,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²²⁾

구 분	김영배·장경태 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지구당 폐지 전
법정 지역당수 (제17조)	없음	30개 이상 (5개 이상 시·도에 분산)	없음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총수의 10분의 1이상
지역당 법정 당원수 (제18조)	없음	100명 이상		30인 이상

창당 시 발기인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역당수와 지역당의 법정

20)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21) 2004년 법 개정 전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으로 총 273석이었음. 참고로, 현재 지역구 의석수는 254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으로 총 300석임.(법 제21조)

22)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당원수를 규정하는 것은 정당 난립 방지의 필요성과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개정의견²³⁾을 제안하면서 시·도당의 설립요건은 삭제하되, 자치구·시·군 총수(2024년 7월 기준 226개)의 10분의 1 이상의 수(약 23개소)에 해당하는 지역당(구·시·군당)을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두는 것을 건의한 바 있음.

③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안 제30조)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²⁴⁾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당을 부활하면서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적게는 1명 이내에서 많게는 2명까지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지구당별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

23)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24)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도록 하고, 당지부에는 5인 이내, 당연락소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²⁵⁾

구 분	김영배의원안	윤상현·남인순·장경태의원안	지구당 폐지 전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	1명 이내	2명 초과 금지	2인 이내
	임의기구에는 유급사무직원 두지 않는 현행 규정 유지		(당지부 5인 이내 당연락소 2인 이내)

이에 대해서는 유급사무직원을 통한 조직 안정성과 책임성 강화, 고비용 정당구조 초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유급사무직원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현행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안 제37조)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공식적인 정당의 지역조직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당이 지역주민들과 보다 가까워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²⁶⁾

25) 「정당법」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 資格등을 갖춘 政策開發研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당지부에는 5인 이내, 지구당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26) 정당 하부조직의 재정 및 재무구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제도적인 대안을 통해서 재정 및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조직과 자금의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으나, 지구당이라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것은 지나친 졸속처사라는 비판이 폐지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 줄곧 제기되었음. 한국정치학회, “생활정치 활성화

이에 2005년 「정당법」 재개정을 통하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정 조직이었던 이전의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의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²⁷⁾

《2005년 「정당법」 재개정내용 비교》

구 분	2004년 개정 정당법 (2004.3.12. 개정)	2005년 개정 정당법 (2005.8.4. 개정)
활동의 자유	제30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u>당원협의회</u> 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제도 개선안: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선거연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p.12.

27) 당원협회의의 명칭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마다 다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로,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이 당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단위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당을 부활하면서 당원협회의 설치단위를 읍·면·동별 또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김영배·남인순· 장경태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당원협의회 설치단위 (제37조)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읍·면·동별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 (명칭은 당원협의회가 아닌 사무소로 변경)

지구당 폐지에 따라 도입되었던 당원협의회를 지역당 부활 이후에도 유지할지 여부와 유지한다면 그 설치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원협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²⁸⁾ (202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읍·면·동수는 3,533개이고, 자치구·시·군은 226개(75개 시, 82개 군, 69개 자치구)임.

문 의 처

02)6788-5332

28)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1)

[2015. 2.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1. 구·시·군당 설치 허용**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은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구·시·군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도 중앙당과 시·도당과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016. 8.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가. 구·시·군당 설치를 통한 생활정치 활성화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구·시·군당 운영의 민주성 확보

-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

다.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시·군당 운영 방안

-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이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 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에 그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 공개 하도록 함.

[2021. 5.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제]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 허용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산하여 자치구·시·군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구·시·군당을 가지도록 함.

* 2020년 12월 현재 자치구·시·군 총수는 226개임.

나.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방지

-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

다.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중앙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김영배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u>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u>이상의 발기인으로</u>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13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도당의 경우에 한정하고, 18세</u> -----.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합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①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도당 및 지역당----- -----. -----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 -----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u>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u>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u>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6조(<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u>	1. 중앙당: 100명 이내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서 <u>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u> 3. 지역당: 1명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u>----- ----- -----<u>시·도당 및 지역</u> <u>당은 1월 31일</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읍·면·동별</u>----- ----- <u>지역당</u>----- ----- ----- ----- 제46조(<u>시·도당 및 지역당</u> 창당승인의 취소) -----
--	---

·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u>시·도당 및 지역당</u>----- -----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당</u>----- ----- ② (현행과 같음)
---	--

<윤상현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u>특별시·광역시·도에</u>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u>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u>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및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u>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u>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u>

<u><신 설></u> ② · ③ (생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9조(합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u>시·도당</u>도 합당한 것으로	<u>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한다.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시·도당 및 지</u>
---	---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역당-----.

-----시

·도당 및 지역당-----

-----.

④-----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시·도당, 지역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시·도당, 지역당-----

-----.

-----.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신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

③-----시·도당, 지역당

-----시·도당, 지역당-----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②-----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

-----시·도당 또는 지역당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

③-----시·도당 또는 지역당-----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당 또는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
-----.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중앙당이 정하며,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

② <u>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u>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u>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u> 1. <u>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u>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u>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u>) 중	② <u>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및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1. <u>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및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u> -----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u>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u>)
---	---

양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u>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u> ② (생략)	의 취소)-----<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2. (현행과 같음) 3.----- ----- ----- -----<u>사무소를 둔 자</u> ② (현행과 같음)
--	---

<남인순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u>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으로-----.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u>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u> -----.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u>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u> 10. <u>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 및 지역당-----.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하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시·도당 또는 지역당-----.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 및 지역당-----시·도당 및 지역당-----. ④ -----
---	--

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
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
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
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
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
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및 지
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③ -----시·도당 및 지
역당-----

양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
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시 · 도당 및 지역당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
역당-----.

[illegible]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
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
지역당-----
-----.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정하고,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별-----

지역당-----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 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하고,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1.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

· <u>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u>도당 및 지역당</u>-----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당</u>----- ----- ② (현행과 같음)
---	---

<장경태의원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로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u> -----.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 및 지역당</u>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u>시·도당의</u> 소재지와 명칭 8. <u>시·도당의</u>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 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당 및 지역당</u> ----- 8. <u>시·도당 및 지역당</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의</u>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합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시·도당의 경우
에 한정하고, 18세 미만인-----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당 및 지역당-----

-----시
·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
·도당 및 지역당-----.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지역당-----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③ -----시·도당, 지역당-----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② -----시·도당 또는 지역당-----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
이나 지역당-----

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100명 이내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u>중앙당과 시·도</u> <u>당은</u>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 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u>시·도당은</u> 1월 31일)까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 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③ 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u> <u>구·시·군, 읍·면·동별로</u>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 지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 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6조(<u>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u>) (생략)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 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 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u>이내</u> 3. <u>지역당: 2명 이내</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u>중앙당, 시·도</u> <u>당 및 지역당</u>-----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u>읍·면·동별로</u>----- ----- -----. -----<u>지역당</u>----- ----- -----. 제46조(<u>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u> <u>의 취소</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및 지</u> <u>역당</u>-----
---	---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당</u>----- ----- ② (현행과 같음)
---	---

